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심사 부서장, 원무 부서장

제 목 2016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

1. 관련 근거

- 가.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·제4항, 별표3
- 나.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제2장 제9조(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) 등
- 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-50 (2016.1.4.)

2. 위 근거와 관련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'2016년 본인부담상한액' 변경사항 알려 온바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가.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

소득분위	1분위	2~3분위	4~5분위	6~7분위	8분위	9분위	10분위
2015년	121만원	151만원	202만원	253만원	303만원	405만원	506만원
2016년	121만원	152만원	203만원	254만원	305만원	407만원	509만원

*2015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0.7%적용 ('15.12.31. 통계청)

나. 적용기간 : 2016.1.1. ~ 2016.12.31.

다. 기타 : 관련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요양기관정보마당(공지사항)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 행 : 보험 제 2016-8 (2016.01.06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

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